

1. 개정이유

병 전역증으로 활용하는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에 사진 등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역증(군경력증명서) 서식 추가(안 제9조)

- 1) 기존 서류형으로 발급했던 전역증을 소장 가치를 갖도록 증장 형태로 발급하도록 서식의 크기와 재질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제6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역증(군 경력증명서)

제 호

발급목적:

사진 (2.5cm×3cm)	군번	계급	
	성명(한자)	군사특기	
	전문자격	생년월일	
복무사항	임관일 (입대일)	전역(예정)일	
	복무개월 (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개월)	최종 근무부대	
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무
전투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명예로운 경력	명칭	기간	주요내용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진급사항	진급일	계급	조기진급 내용
상훈사항	수여일	상훈명	공적 내용
그 밖의 사항 (봉사활동 등 각 군 특성을 반영)	구분(기간)	내 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전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직인

연락처:

유효기간: 20 년 월 일 까지

148mm×210mm[백상지 150g/㎡ 또는 1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생략)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u>별지 제6호의2서식</u>	1. ----- ----- --- <u>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제6호의3서식</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